

제조물책임 관련 판례와 사례 (Ⅲ)

글 · 강창경 연구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

3. 소형믹서 결합으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청구인은 '99.12.10 피청구인이 제조한 소형 믹서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00.1.5 청구인의 아들(4세)이 싱크대 위에 있던 믹서를 내려 전원을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순간 컵이 깨지면서 튀어 나가고 돌아가는 칼날에 오른손 중지와 약지가 절단되고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두 손가락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에게 동 사고가 이 건 믹서의 안전장치 미비로 발생하였으므로 치료비 등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청구인은 사용자 과실이라며 배상을 거부함.

[당사자 주장]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믹서의 조립 상태가 완전하지 않으면 전원을 연결하여도 작동되지 않아야 하나 이 건 믹서는 컵이 칼날부와 불완전하게 조립된 상태에서 작동하여 동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제품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치료비 등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가정 내의 어린이 안전은 보호자가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을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 방치한 청구인의 과실로 동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결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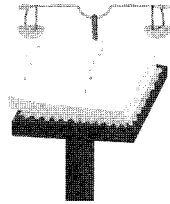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0.4.29일까지 금 4,000,000원을 지급한다.

[조정결정이유]

1) 피청구인의 배상책임

이 건 믹서는 분쇄할 내용물이 든 컵을 칼날과 결합해 본체에 올려놓고 조인 다음 별도의 작동 스위치 없이 바로 전원을 연결하면 작동되는 제품으로서 작동시 칼날이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컵과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칼날부만 작동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1998.11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 건 소형믹서와 작동방법이 유사한 제품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믹서와 같이 용기가 칼날부에 결



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본체에 칼날부만 맞춰 기우고 누르면 칼날이 돌아가는 제품의 경우 '매우 위험한' 제품으로 평가되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리콜하도록 산업자원부에 건의,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하였으며, 칼날이 노출된 상태에서는 제품이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전기용품기술기준'에 반영된 바 있음.

따라서 이 건 사고는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동제품을 놓아둔 청구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동제품의 안전장치 미비로 인해 성인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제품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제조상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할 것임.

2) 배상금액

청구인의 자 ○○○(4세)은 이 건 사고로 인해 오른손 중지와 약지가 절단되어 봉합수술을 하였으나 향후(약10년 후) 뼈 제거 수술(중지) 및 휘어진 손가락을 바로 잡는 수술(약지)을 해야하며, 약지는 성장판이 손상되어 향후 변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인 바, 중지와 약지의 봉합수술 및 치료에 소요된 치료비 2,000,000원과 중지와 약지의 추가 수술에 대한 예상 치료비 1,770,000원을 합산한 금 3,770,000원 중 청구인의 과실 부분을 상계한 금 2,000,000원에 동사고 발생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및 향후 오른손 장애에 따른 사용상 불편함에 대한 배상금 2,000,000원을 합산한 금액 4,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조정결과] 성립

4. 이온수기 화재로 인한 가구 등의 피해 배상 요구 건

[사건개요]

청구인은 '89.11 중순경 피청구인이 제조한 석유 팬히터를 구입하여 집의 거실에 설치하여 사용함. 약 1년이 지나 청구인의 초등학교 5학년생이 혼자서 팬히터를 켜두고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던 중 팬히터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 APT내부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음.

[당사자 주장]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품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입은 피해이므로 전소된 주택내부의 시설 및 가재도구 등의 피해 금 30,000,000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화재는 제품의 하자 때문이 아니고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함.

[조정결정]

당사자간의 합의로 피청구인이 금 8,05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함.

[조정결과] 성립